

		보 도 자 료 3월 12일(화) 국무회의 시작(08:00) 이후		
배 포 일		2019. 3. 11. / (총 6매)		
아동복지정책과 (영향평가)	과 장	성 창 현	전 화	044-202-3410
	담당자	홍 승 표		044-202-3822
아동권리과 (자립수당)	과 장	변 효 순		044-202-3430
	담당자	권 고 운		044-202-3446

아동정책영향평가 시행자립수당 지급 근거 명확히 한다

-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(3.12)-
 - 아동정책영향평가 시행을 위한 평가 대상·방법·절차 등 세부사항과 시설 퇴소아동 등에 대한 자립수당 지급 근거 규정 -
- ☐ 보건복지부(장관 박능후)는 아동정책영향평가 시행과 자립수당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는 「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」이 3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.
- ☐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 아동정책영향평가*의 평가 대상, 방법 및 절차 등 (안 제12조의2)

- *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·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·시행에 반영 (아동복지법 제11조의2 : '16.3.22 개정, '19.3.23 시행)
-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동 관련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 직접 아동정책영향평가를 하거나,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아동정책영향평가를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게 하였다.

- 아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영향평가 필요성이 있는 정책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직접 영향평가를 할 수 있고, 정책 제언 및 개선 권고 등이 담긴 결과를 소관 중앙부처·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아동정책조정위원회*에 보고하도록 하였다.

*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의견을 조정하며 정책이행을 감독·평가, 관계 부처 장관과 민간전문가로 위원 구성(아동복지법 제10조)

② 자립수당* 지급의 법적 근거 마련 (안 제38조제1항제4호)

* '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아동에게 매월 30만 원의 자립수당을 지급

- 보호종료아동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자립 지연 및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,
-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18세가 되어 시설에서 퇴소하는 보호종료아동의 생활비 등 지원을 위하여 자립수당을 정기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.

- ☐ 보건복지부는 올해 아동정책영향평가 시범사업을 통해 평가 대상 등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.
- 또한 자립수당 법적 근거 마련으로 보호종료아동('17.5월 이후 보호종료)에게 올해 4월부터 월 30만 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.
- ☐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아동정책관은 “아동정책영향평가와 자립수당에 대한 정책 관계자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포용국가의 주춧돌인 아동을 위해 보다 내실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.”고 밝혔다.

<참고> 1. 아동정책 영향평가 제도 도입 방안
2.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사업 개요

<별첨>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참고 1 아동정책 영향평가 제도 도입 방안

① 영향평가의 목적

- 정책 개발의 초기 단계부터 아동에 미칠 긍정적·부정적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 수립에 반영

* 예시) 지자체 **거리횡단보도** 확충 사업시 **아동 안전권**의 고려, **정책 홍보** 사업시 **아동 참여권**(아동 대상 **홍보**)의 고려

② 평가 대상 및 방법

- (평가 대상) ▲아동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는 정책과 ▲아동의 권리(건강, 안전, 발달 등)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앙정부·지방자치단체의 정책

- 중앙부처·지방자치단체의 사업담당자가 자가 점검표를 이용하여 평가 대상을 선정·평가하되*, 아동영향평가 할 필요성이 있는 정책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하여 직접 평가 가능

*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의무적인 평가 대상 없이 시범운영한 후 관계 중앙부처·지방자치단체 협의와 아동정책조정위원회(위원장 국무총리) 심의를 거쳐 확정한 평가 대상 범위를 지침에 담을 예정

※ 문화영향평가의 경우, '14년 도입 시부터 의무 평가 대상 없이 전문평가기관이 평가 대상을 선정하여 평가하는 전문평가 위주로 운영하였고, '17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(시범평가)에 대하여 교육·컨설팅 등 지원하여 자발적이고 내실있는 평가 유도 중

○ (평가 방법)

- (자체평가) 평가 대상 정책의 소관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가 체크리스트 등을 통해 자체평가

- (전문평가) 신규 정책 중 심층적인 평가가 필요한 정책*을 보건복지부가 선정하여 평가 전문기관을 통해 평가

* 관계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평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정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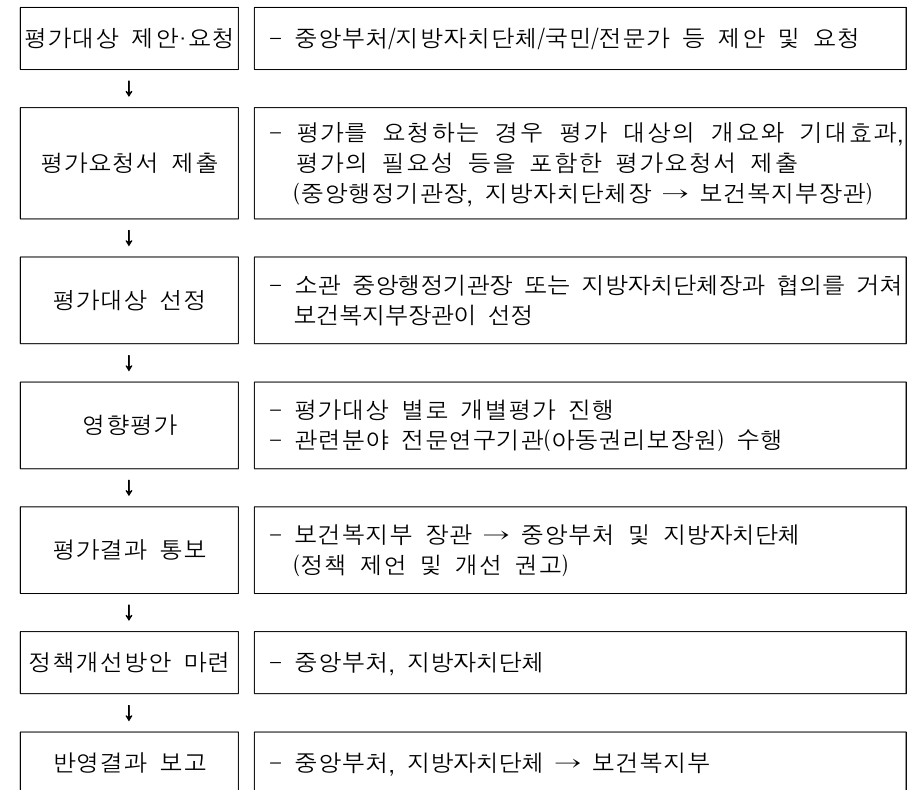
③ 평가 절차

- (자체평가) 해당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가 점검표(체크리스트) 등을 통해 소관 정책의 수립·시행 시 평가

- 자체평가 결과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(아동권리보장원)의 평가결과 검토 및 전문가 컨설팅 지원 계획 (중앙부처·지방자치단체 신청시)

- (전문평가)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부처·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선정한 정책 등에 대하여 전문평가기관(아동권리보장원)이 평가 수행*

* 아동권리보장원에 영향평가를 위탁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개정('19.1.15 공포, 7.16 시행)



④ 평가 지표(안)

- 유엔아동권리협약의 **4대 일반 원칙*** 등을 고려하여 지표 선정
 - * (4대 원칙) 무차별의 원칙,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, 아동의 생명·생존과 발달보장의 원칙, 아동 의견 존중의 원칙
- 무차별의 원칙 준수, 아동 최선의 이익 고려, 아동의 4대 권리* 고려, 아동의 의견수렴·홍보 여부, 아동권리 증진 효과 등을 기준으로 평가
 - * 생존권, 보호권(각종 차별, 착취, 학대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), 발달권(신체·정서·도덕·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교육을 받고 놀이, 여가, 문화 등을 누릴 권리), 참여권
- 전문평가의 경우, 정책 분야별로 구체적인 지표가 상이할 수 있어 소관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를 거쳐 지표 선정

⑤ 향후 계획

- 올해 중 아동정책영향평가 시범사업 등을 통해 평가 대상, 평가 지표 등에 관하여 구체화한 세부지침(매뉴얼)을 마련하고,
 -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에 대한 교육·전문 컨설팅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자발적인 평가 및 결과 반영 유도

참고 2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사업 개요

① 필요성

- 보호종료아동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아르바이트와 학업 병행 등으로 인한 자립 지연 및 경제적 어려움 경험
 - * 보호종결 후 가장 어려운 점은 경제적 부족함(31.1%),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생활비 지원(41.1%) ('16년, 보호종결아동 자립실태 조사 결과)
-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성 확보 및 안정적 자립을 위해 국가 차원의 지속적 지원 필요

② 지원 내용

- (지급대상) '17년 5월 이후 아동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, 가정 위탁에서 보호종료된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아동
 -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(만기 보호종료 또는 연장 보호종료)된 아동
 -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
- (지급금액) 매월 20일, 아동 본인 명의 계좌로 30만 원 입금
- (사례관리) 자립수당 지급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연계
 - 아동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 보호종료아동 : 반기별 1회 이상
 -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: 연 1회 이상
- (지급기간) '19.4월~12월(시범사업)
- (소요예산) '19년 국비 98억5000만 원(평균 보조율 73.83%)

③ 기대 효과

-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및 자립 성공률 제고